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기관의 장 **삼**

제35호

제35호 2020. 7. 3(금)

훈령

○ 남원시 훈령 제412호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
○ 남원시 훈령 제413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19
○ 남원시 훈령 제414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20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20-11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4
○ 남원시 고시 제2020-113호 남원도시관리계획(반선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20-115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사[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조성사업]-33
○ 남원시 고시 제2020-116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사[옛다솜 이야기원 조성공사]	- 37
○ 남원시 고시 제2020-117호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예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 40
공 고	
8 =	
○ 남원시 공고 제2020-1290호 도로지정공고	- 43
회	
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20년 7월 3일

남원시 훈령 제 412 호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남원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 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복무, 근로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수"를 "정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도로보수원"을 "도로관리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정수관리"를 "정원관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수관수)"를 "(정원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정수를"을 "정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정수의"를 "정원의"로 하며 "도로보수원"을 "도로관리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정수를"을 "정원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수책정)"을 "(정원책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정수는"을 "정

시

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정수를"을 각각 "정원을"로 하며, "정수책정요구서"를 각각 "정원책정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정수책정"을 "정원책정"으로 하며 "정수의"를 "정원의"로 한다.

- 제7조의 제목 "(정수의 삭감)"을 "(정원의 삭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정수를"을 각각 "정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정수로"를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정수책정"을 "정원책정"으로 하며, 제4호 중 "정수는"은 "정원은"으로 하고, 제5호 중 "정수"는 "정원"으로 하며 제7호 중 "정수를"을 "정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수를"을 "정원을"로 한다.
- 제8조제1호 중 "정수대장"을 "정원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수책정승인 대장"을 "정원책정승인대장"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정수인력"을 "정원"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수책정"을 "정원책정"으로 한다.
- 제44조제2항 중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제2항을"을 "제23조제13항제1호를"로 한다.
- 제80조제2항 본문 중 "「남원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를 "「남원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따른다"로 한다.
- 별표 1의 제목 "공무직근로자 정수표"를 "공무직근로자 정원표"로 하고,

별표 1의2의 제목 "청원경찰의 정수"를 "청원경찰의 정원"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정수"를 각각 "정원"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중 "도로보수원"을 "도로관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햀

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 준법」에 따라 남원시(본청・ 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3. (생략)
- 4.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 수, 복무, 지도·감독 등 총 괄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지원 과를 말한다.

5.~7. (생략)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략)
-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 수 · 유지 · 관리 업무를 담당 하는 인력

개 정 안

준법 | 에 따라 남원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 및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복무, 근 로조건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 적이고 통일성 있는 인력관리 를 목적으로 한다.

- 1.~3. (현행과 같음)
- 윈 -----

5.~7. (현행과 같음)

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도로관리원 -----

보

시

4.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2장 정수관리

- <u>제5조(정수관수)</u> ① 관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자 의 <u>정수를</u> 관리하여야 한다.
 - ② <u>정수의</u> 구분은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u>도로보수원</u>, 환경 관리원, 물리치료사, 의료급여 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영양 플러스, 방문건강관리 전환자 로 구분하여 각각 있는 것으로 한다.
 - ③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u>정</u> 수를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소 속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야 한다.
- **제6조**(정수책정) ① 근로자의 직 종별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 ② 소속부서는 근로자의 정수 를 새로 책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수책정요 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부서는 소속부서로부터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4.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장 정원관리
<u> 계4 8 ~ 8 단단 円</u>
<u>제5조(정원관리)</u> ①
정원을
② <u>정원의</u>
<u>도로관리원</u>
③ <u>정원</u>
<u>으</u>
· 레C조(저이체저) ①
제6조(정원책정) ①
<u>정원은</u>
② <u>정원</u>
<u> </u>
정원책정요
 구서를
3
<u>정원책정요구서를</u>

때에는	채용	목적	• 인	원 •	업	무
량ㆍ급៰	를 등의	적	정 🌣	부모	가	인
력 등을	· 종합	적으	로	검토	하	여
정수를	책정ㅎ	·고,	결고	를	별	기
제3호 /	서식 :	또는	増え	지 >	भ]4	호
서식에	따라	예산-	부서	및	소	속
부서에 -	통보힌	다.				

④ 관리부서는 제3항의 정수책 정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 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 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부서 에서 책정한 정수의 범위에서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 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의 삭감)
 ① 관리부서
 건

 는 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
 를 위하여 소속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정수를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정수를

 삭감 운영하여야 한다.

- 근로자 <u>정수로</u> 책정된 업무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 으로 대체된 경우
- 사용자가 <u>정수책정</u> 사무와 다르게 임의로 사무를 변경 한 경우

	정원을	
	4	<u>정원책</u>
	정	
	정원의 -	
	<u> </u>	
	,	
적]7조 (정원의 삭감) ①	
	정원을	
		<u>0 U Z</u>
	1 <u>정원으로</u>	
	2 <u>정원책정</u>	

- 3. (생략)
- 4. 행정실무원 인력에 채용된

 그 현원 해당자의 퇴직 등

 근로해제 발생 시 정수는 삭

 감된 것으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한다.
- 5. 행정실무원 인력 감소를 위하여 타 직종 근로자가 퇴직시에 행정실무원 중 타 직종 전환 희망 시 그 직종으로 전환 후 행정실무원 <u>정수</u> 삭감
- 6. (생략)
- 7. 행정업무 수요 증가로 근로 자 필요시 관리부서는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행정실무원 의 정수를 조정하여 적정한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는 채용목적과 다르거나 채용목적의 소멸, 예산의 감소, 사업의 폐지 등 포괄적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부서별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생 략)

1.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정수

3. (현행과 같음)	
4	
	<u>정원은</u>
<u>.</u>	
5	
	- <u>정원</u>
- (515) 1 (10)	
6. (현행과 같음)	
7	
	. — — — — — — —
- <u>정원을</u>	
<u>'항면로</u> 	
· ②	
<u>정원을</u>	
 제8조(대장 등 비치)	
승)	
1	정원

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u>정수책정승인대장</u> : 별지 제5호서식

시

3.~4. (생략)

제9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 로자 전환) ① (생 략)

- ② (생 략)
- ③ 관리부서는 제6조의 근로자 정수인력, 인건비 예산, 현황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 대상 인원을 정하고, 제2항의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근 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 정하며 전환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을 별도 관리한다.
- ④ (생 략)
- 제10조(채용) ① 소속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리부서에 정수책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관리원은 소속부서에서 채용한다.
 - ② (생 략)
 - ③ ~ ⑤ (생략)

제44조(특별휴가) ① (생 략)

<u> </u>
2. <u>정원책정승인대장</u>
3.~4. (현행과 같음)
제9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
로자 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정원</u>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채용) ①
<u>정원책정을</u>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

 $(\widehat{2})$ -----

② 소속부서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0년마다 10 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2.~5. (생략)

제80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생 략)

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 | 을 준용한다.

음)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 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간 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제23조 제13항제1호를 준용한다.

2.~5. (현행과 같음)

제80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현 행과 같음)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원 ② ----- 「남원 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_ 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정원대장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행	정 실	일 무	원	入] 설 관							
부서별	계	소계		청사 환경		소계	시설 물장 비 유지 관리	현공사업등 장관 현관리	현장 지도 단속, 감시 관리	도 로 관리원	환 경 관리원	물 리 치료사	의료급여 관리사	정수변경 일 자

【별지 제2호서식】

7	공무직근로지	ㅏ <mark>정</mark> 원 책 정	3 요 구 서 (제6조	드제2항 관련)
직 종				
근 무 내 용				
채용 필요성 (구체적)	명			
요 구 인 원	명			
	업무명	업무처리 총소요일수	1일 평균 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연 간 업 무 량				
	구 분	소 요 액 (천원)	산 ·	출 근 거
보수지급 기 준	급 여			
	수 당			
예산재원				
근무시간				
	공무직근로자 운영 정을 요구합니다.	형 규정」제6조기	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공무직근로
		년 월	일	
		00)실과소·읍면동장	(인)
남원시장 귀히	5}-			

* 업무처리 총소요일수는 처리시간 ÷ 8근무시간 × 처리기간을 말한다.

보

【별지 제3호서식】

제35호

	공 무 작	l 근 로 자	정 원 책 정 성) 인 서 (제6	조제3항 관련)
직	종				
근	무내용				
채	용목적				
രി രി	요 구 인 원	명			
인원	승 인 인 원	명			
		구 분	소 요 액 (천 원)	산	출 근 거
보 ⁻ 기	수 지 급 준	급 여			
		수 당			
승	인조건				
그부	낙에 사항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책정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공무직근로자 <mark>정원 불승인 통보서 (제6조제3항 관련)</mark>

에서 제출한 공무직근로자 <mark>정원</mark> 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 되었기에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요구일자	건 명	내 용	사 유

년 월 일

관리부서장⑩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 원 책 정 승 인 대 장 (제8조제2호 관련)

사용부서	직 종	인 원	월급여액	근 무 내 용	비고

	0	ТΞ	i⊏	王	71	0	건크	±(.	VII C)소	제:	l 양	쓴	면)																									
				행정성	실무원			시설	관리원			환	F	의료	통합	OT 01	방문		전환자																					
	구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Э	소계	행정보2	청사환경	진료 보조	소계	시설 물장 비 유지	현장 공사, 작업 등	현장 지도 단속, 감시	도 로 관리 원	환 경 관리 원	물 리 치료 사	의료 급여 관리 사	통합 사례 관리 사	영 양 플러 스	건 강관 리	소계	자체 재원 작군	의존 재원 작군
	Я	301	74	67	4	3	39	8	23	8	13	84	9	2	3	2	9	66	33	33																				
	소계	190	35	32	3	0	15	0	7	8	13	73	0	2	3	0	0	49	28	21																				
	기획실	2	1	1			1		1									0																						
	감사실	0	0				0											0																						
	시민소통실	1	1.	1	a >>		0				s >>		8 8		a .		8 6	0	8 ×																					
	총무과	8	6	3	3		2		2									0																						
	홍보전산과	3	1	1			1		1									1	1																					
	민원과	6	3	3		1	0	1	1		I							3	1	2																				
	문화예술과	10	5	5	a .		0 =	_	1		/		8 8		a - s		8 6	5	5																					
	관광과	4	2	2		1.5	0	- 4				-						2	2																					
	교육체육과	10	1	1			0					2						7		7																				
	주민복지과	7	2	2			0							2	3			0																						
본청	여성가족과	10	0		a		a		8 ×				2 ×		a		8 6	10	1	9																				
	환경과	73	0				0					71						2	2																					
	재정과	8	3	3			0											5	5																					
	경제과	5	3	3			1			1								1	1																					
	안전재 난과	0	0		a		0		8 .		s		8 >		a		8 5	0	8 >																					
	농정과	3	2	2			0											1		1																				
	원예허브과	3	1	1			2		2									0																						
	축산과	2	1	1			0											1	1																					
	산림과	10	0				1		1				8 2		8 %		8 8	9	7	2																				
	도시과	1	1	1			0											0																						
	건설과	17	0	0			3			3	13							1	1																					
	교통과	7	2	2			4			4								91	1																					
	건축과	0	0				0		0. 2.		0. 2.		0. 5		20			0	25																					

	공목	구조	근	呈	八	정	원	표(제6	조(제 :	항	굔	l 려)					
				78030033	실무원			200000	관리원			환	물	의료	통합	~ ~	방문		전환자	
	구분	Э	소계	행정보2	청사환?	진료 보조	소계	시설 물장 비 유지	현장 공사, 작업 등	현장 지도 단속, 감시	도 로 관리 원	경 관리 원	기 치료 사	급여 관리 사	사례 관리 사	영 양 플러 스	건 강관 리	소계	자체 재원 작군	의 종 재 등 작 등
지소	소계	45	6	3	0	3	5	0	5	0	0	1	9	0	0	2	9	13	2	11
직속 기관	보건소	35	3			3	0					1	9			2	9	11		11
기진	농업기술센터	10	3	3		0 0	5	ii.	5	d.		u o	6			a e		2	2	0
	소계	37	5	5	0	0	19	8	11	0	0	10	0	0	0	0	0	3	2	1
사업	관광시설사업소	23	4	4			8	8				8		S 9		5 0		3	2	1
소	환경사업소	5	0				3		3			2						0		
- 10	상수도사업소	9	1	1		,	8	5	8	3		8		S .		5 0		0		o o
의	회사무국	6	5	4	1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	소계	23	23	2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운봉읍	Î	1				0											0		
	주천면	1	1	1			0		01					5 0		57 - 0 57 - 0	į,	0		
	수지면	Î	1	1		0	0	I	1	7	I							0		
	송동면	1	1	1			0			1				S 9		0		0		3
	주생면	1	1	1			0	1		1		1						0		
8	금지면	1	1	1			0											0		
**	대강면	1	1	4			0											0		
6	대산면	1	1	1			0	j.		j.								0		
-	사매면	7	1	1			0											0		
enerous Serverous	덕과면	1	1	1			0											0		
읍면	보절면	9	1	1			0											0		Ĭ
동	산동면	i	1	1			0	Î		Î.				8		9 4	1	0		Î
99	이백면	i	1	14			ō											0		
6	인월면	1	1	1			0							5 S				0		
99	아영면	i	1	Ī			ō										ĺ	0		
6	산내면	i	1	1			0			Î.				9				0		Ï
59	동충동	i	1	Ť			ō							Y Y				0		
	- <u>- 유용용</u> 국항동			1			0	.00			2.00	- V 22.	2 2	67.E. 21.	200	100		0	275	100
25	노암동	i	1	i			ŏ	j		j i				0 0		5 0		Ō		
1	금동	1	1	1			Ō	21	HO									0		
100	왕정동	j	1	î			0	0 -	-11 0	1			i.			\$ P		0		8
10	향교동	1	1	1			0											0		90
	도통동	1	1	1	1		0	4.		4.				i	į.	<u>.</u>		0		st.

제35호

		청원경찰	날의 정원	
	부서별	Я	경비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Я	27	27	0
	소계	18	18	
-	행정지원과	4	4	
	민원과	1	Ť.	
본청 -	문화예술과	3	3	
	교육체육과	1111	이지	
	여성가족과	2	2	
	산림녹지과	6	6	
8	건설과	1	1	
	소계	1	1	
직속기관 -	보건소	1	Ĭ.	
	소계	7	7	
1104 .	관광시설사업소	2	2	
사업소 -	환경사업소	2	2	
	상수도사업소	3	3	
9	의회사무국	1	Ť	

보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3일

남원시 훈령 제 413 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4, 5,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남원시 홈페이지-남원시보 참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7월 3일

남원시 훈령 제 414 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 중 "의약검진담당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약무주사로, 위생안전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를 "의약검진담당은 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약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로, 위생안 전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 제27조 중 "한방재활담당은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를 "한방재활담당은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제30조 중 "시설정비담당·시설환경담당·춘향테마파크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 또는 지방사무운영주사로 보한다"를 "시설정비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 또는 지방사무운영주사로, 시설환경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춘향테마파크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 또는 지방사무운영주사로 보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에 보건행정담당·감염병관리담당	제26조(보건지원과)
· 의약검진담당 · 위생안전담당	
을 두고, 보건행정담당은 지방	
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감염병관리담당은 지방보건주	
사・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	
료기술주사로, <u>의약검진담당은</u>	, <u>의약검진담당은</u>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약무주	지방보건주사・지방의료기술주
사로, 위생안전담당은 지방행정	사・지방약무주사 또는 지방간
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	호주사로, 위생안전담당은 지방
보건주사로 보한다.	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지방
	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환경주
	사로 보한다.
제27조(건강생활과) 건강생활과에	제27조(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 · 통합건강증진담	
당·한방재활담당을 두고, 출산	
지원담당・통합건강증진담당은	
각각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	
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
한방재활담당은 지방보건주사	한방재활담당은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
	기술주사로 보한다.
제30조(관광시설사업소) 시설사업	제30조(관광시설사업소)

소에 시설지원담당·시설정비 담당·시설환경담당·춘향테마 파크담당을 두고, 시설지원담당 은 지방행정주사로, <u>시설정비담</u> 당·시설환경담당·춘향테마파 크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 시설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 또는 지방사무운영주사로 보한 다.

제35호

------------, <u>시설정비담</u> 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 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 또는

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 주사·지방방송통신주사 또는 지방사무운영주사로, 시설환경 담당은 지방행정주사·지방공 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춘향테마파크담당은 지방행정 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방송 통신주사 또는 지방사무운영주 사로 보한다. 남원시 고시 제2020 - 111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7월 3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 초	비고	
11年	표시번호	기결정	ガ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변경	2	문화시설	쌍교동 260번지 일원	3,380	증) 721	4,101	남원시 고시 2018-63호		

나.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문화시설	• 면적변경 - 3,380㎡ ⇒ 4,101㎡	• 광한루원 동편에 문화시설을 조성 각종 공연, 축제행사 및 남원관광지를 연계한 사업시행을 위해 도
		(중 721 m²)	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2. 남원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면: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0 - 113호

시

남원도시관리계획(반선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반선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의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전화:063-620-64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남 원 시 장 2020년 7월 3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 역 의 세 분	위 치	면 기정		적(m²)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남원 반선지구 단위계획구역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240번지 일원	69,344	-	69,344	2014.3.14. (남원제2014-17호)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マ	분		면 적 (m²)		구 성 비	비고	
T	正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Ol 17	
합	계	69,344	_	69,344	100.00		
계획관리지역		69,344	_	69,344	10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총괄표 (변경없음)

	힡	<u> </u>	계	1	투	7	2	2 투	7	3 류		
구 분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2	832	16,282	-	-	-	1	721	14,863	1	111	1,419
중로	1	111	1,419	_	_	-	-	_	-	1	111	1,419
소로	1	721	14,863	-	-	-	1	721	14,863	-	-	-

2)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딞	규 류별	도 번호	2 폭원(m)	꺄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3	1	13	국지 도로	111	산내면 부운리 661천	산내면 부운리 216-10잡	일반 도로		2014.3.14. 남원제2014-17호	
기정	소로	2 (2)	931 (1)	8	주간선 도로	16,390 (721)	소로2-924 산내면 대정리 563-1도 (산내면 부운리 251-3도)	덕동리 경계 산내면 덕동리 산215-16임 (산내면 부운리 215-2도)	일반 도로	대정 취락 서측 경계	전리북도 고시 제2010-200호	지방도 861호선 (지구단위구 역 내)

3)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²))	최 초	비고
十正	번 호	시결경	ח א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0177
기정	1	노외 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238번지 일원	2,131	_	2,131	2014.3.14. 남원제2014-17호	
변경	2	노외 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242-6번지 일원	1,794	감)506	1,288	2014.3.14. 남원제2014-17호	
기정	3	노외 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216-1번지 일원	4,399	_	4,399	2014.3.14. 남원제2014-17호	
기정	4	노외 주차장	산내면 부운리 216-10번지 일원	2,375	_	2,375	2014.3.14. 남원제2014-17호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노외주차장	○ 면적 감소 - 면적 : 1,794㎡ → 1,288㎡ (감) 506 ㎡	산내면 반선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기존 주차장 면적 축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구는 2개의 가구로 설정한다.

- 가구의 번호 표시는 "1,2…"로 표시하고, 이하 계획에서 위치의 표시 방법에 사용한다.
- 획지의 번호 표시는 "①,②…"로 표시하고, 이하 계획에서 위치의 표시 방법에 사용한다.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가	구			획 지		шп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번:		위 치	면적(m²)	비고						
		1)	산내면 부운리 238번지 일원	18,810	녹지용지						
		2)	산내면 부운리 215-3번지 일원	2,131	주차장						
		3)	산내면 부운리 215-9번지 일원	2,356	상업용지						
		4)	산내면 부운리 235-7번지 일원	447	주차장						
1	1 33,728	33,728	33,728	33.728	33,728	33,728	33,728	(5)	산내면 부운리 234-2번지 일원	2,200	관광휴양시설용지
		6)	산내면 부운리 239-2번지 일원	2,198	관광휴양시설용지						
				(7)	산내면 부운리 240번지 일원	3,792	상업용지				
			기정	8	산내면 부운리 242-6번지 일원	1,794	주차장					
		변경		산내면 부운리 242-6번지 일원	1,288	주차장						
		신설	9	산내면 부운리 242-17번지 일원	506	보건진료소						
		1)	산내면 부운리 216번지	327	녹지용지						
		2		산내면 부운리 216-1번지 일원	4,399	주차장						
2	19,334	3)	산내면 부운리 216-9번지 일원	1,451	마을하수도						
۷	19,334	4)	산내면 부운리 산98-4번지 일원	3,587	녹지용지						
		(5)	산내면 부운리 216-10번지 일원	2,375	주차장						
	_	6)	산내면 부운리 218-3번지 일원	7,195	관광휴양시설용지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⑤, 1-⑥, 2-⑥		ने ह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회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불호	형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노	0	최고층수 : 4층 이하	

나. 상업용지 (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3, 1-7	_	허 용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8호의 장고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제21호의 동물 및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호	
		높 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다. 공공시설용지(금회변경)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②, 1-④, 1-⑧, 2-②,		· 하 용	기 정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마을하수도					
	_	8 5	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mark>파출소,</mark>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22호의 자원순환시설중 하수등 처리시설					
2-③, 2-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펴	율	20% 이하					
		용 적	률	40% 이하					
		노	0	최고층수 : 2층 이하					

▋ 공공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등의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u>번호</u>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②, 1-④, 1-⑧, 2-②, 2-③, 2-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정: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마을하수도 변경: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mark>파출소</mark>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22호의 지원순환시설중 하수등 처리시설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설치 완료된 여름파출소의 기존건축물을 반영하여 제1종근 린생활시설 중 파출소를 추가 ○기 설치완료된 마을하수도시설 은 건축법규정을 준수하여 자원순환시설 중 하수등 처리시설에 해당하여 반영함

라. 공공시설용지 (신설)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허 용	용 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진료소	
1-9	_	불	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০ ক	
		용	적 률	100% 이하	
		노	0	최고층수 : 3층 이하	

▮ 공공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등의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진료소	○ 남원시의 의료 접근성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며, 남원시 면지 역 중 유일하게 보건진료소가 없는 반선지역으로서 보건진료 소의 신설을 위한 여건 마련
1-9	건폐율	40%이 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 거 도시지역외지역에서의 지구
	용적율	100%이하	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공공시 설의 제공 여부도 불구하고 완 화적용 가능한 사항으로서 <mark>현</mark>
	높 이	최고 3층이하	재 계획관지지역의 최소규모의 용적율 및 건페율등을 완화하 여 계획 함

마. 녹지용지 (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①, 2-①, 2-④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3호의 숙박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제2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중 축사 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5호의 발전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노 이	최고층수 : 3층 이하	

6.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 차량진출입구는 1필지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 사업대상지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공동주차장 (10,640㎡) 설치

제35호

남원시 고시 제2020 - 115호

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조성사업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07월 03일

-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가. 사업의 명칭 :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어현동 37-12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9,946 m²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테마파트 주식회사 대표 이용운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5, 6층(별양동)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1. 09. 30.
-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ㅇ 모노레일

연	=	소재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	계인	- 비고
5J 컨	동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분)
		합계		503,190	8,972						
1	노암동	10	답	11,356	1	남*시					
2	노암동	1	전	813	5	남*시					
3	노암동	2-3	전	821	4	남*시					
4	노암동	3	전	8,666	65	남*시					
5	노암동	419	전	212	95	남*시					
6	노암동	421-1	답	1,884	7	남*시					
7	노암동	421-2	답	1,983	187	남*시					
8	노암동	422-1	답	7,157	391	이*선	하*동 1*2				
9	노암동	433	전	1,646	23	남*시					
10	노암동	438	전	793	4	남*시					
11	노암동	810-10	구	1,096	35	국(건*부)					
12	노암동	810-15	구	4,901	567	국(건*부)					
13	노암동	828	도	126	7	국(건*부)					
14	노암동	829	구	179	9	국(농***식품부)					
15	노암동	산10-5	도	100	7	남*시					
16	노암동	산10-7	임	10,317	445	남*시					
17	노암동	산10-8	임	2,437	41	남*시					
18	노암동	산10	임	21,093	119	남*시					
19	노암동	산11-1	임	2,691	115	남*시					
20	노암동	산11-2	임	5,151	200	남*시					

보

연	소	재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기	비인	비고
번	동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분)
21	노암동	산11	임	2,571	204	남*시					
22	노암동	산9-2	임	22,847	771	남*시					
23	어현동	37-111	도	20,099	232	남*시					
24	어현동	37-12	원	17,017	1,321	남*시					
25	어현동	37-153	원	49	13	남*시					
26	어현동	37-158	원	8,169	541	남*시					
27	어현동	37-176	원	220	3	남*시					
28	어현동	37-177	원	132	3	남*시					
29	어현동	37-178	원	63,622	1,626	남*시					
30	어현동	37-187	원	836	95	남*시					
31	어현동	37-190	원	283	18	남*시					
32	어현동	37-20	원	685	279	남*시					
33	어현동	37-21	원	1,055	79	남*시					
34	어현동	37-74	원	3,054	141	남*시					
35	어현동	37-79	원	1,881	267	남*시					
36	어현동	37-7	도	5,821	79	남*시					
37	어현동	37-99	원	267,512	16	남*시					
38	어현동	산88-2	임	2,123	867	남*시					
39	어현동	산88-3	도	918	79	남*시					
40	어현동	산88-5	도	874	11	남*시					

ㅇ 짚와이어

CH.	소지	비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연 번	뇽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분)	
	Ī	합계		29,063	974								
1	노암동	1	전	813	465		남*시						
2	노암동	422-1	답	7,157	102	이*선		하*동 1*2					
3	노암동	산10	임	21,093	407		남*시						

제35호

남원시 고시 제2020 - 116호

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공사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07월 03일

-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사업의 명칭 :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공사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노암동 426-4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46,235 m²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남원시장(관광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2. 04. 30.
-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	외의 권리자	비고
민호	조세시	시민	시국	(m²)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11 12
	합 계			94,841	46,235					
1	노암동	810-15	구	4,901	3,475	국	건*부			
2	노암동	426-2	대	999	999	국	남*시			
3	노암동	431	답	721	721	국	남*시			
4	노암동	810-4	구	30	30	국	건*부			
5	노암동	산10-7	임	10,317	4,978	국	남*시			
6	노암동	810-5	구	26	26	국	건*부			
7	노암동	432	전	1,676	1,676	국	남*시			
8	노암동	433	전	1,646	1,600	국	남*시			
9	노암동	산11	임	2,571	622	국	남*시			
10	노암동	산10	임	21,093	237	국	남*시			
11	노암동	산11-1	임	2,691	178	국	남*시			
12	노암동	9	답	2,649	2,554	국	남*시			
13	노암동	산11-2	임	5,151	400	국	남*시			
14	노암동	5	전	367	367	국	남*시			
15	노암동	3	전	8,666	7,704	국	남*시			
16	노암동	3-1	전	1,291	5	국	남*시			
17	노암동	2-3	전	821	441	국	남*시			
18	어현동	산88	임	4,072	3,453	국	남*시			
19	어현동	276	전	1,156	1,104	국	남*시			
20	노암동	산12-10	임	21	8	국	남*시			
21	노암동	10	답	11,356	10,602	국	남*시			
22	노암동	810-6	구	27	27	국	건*부			
23	노암동	10-1	답	3,498	4	국	남*시			
24	노암동	810-16	구	127	13	국	건*부			
25	노암동	426-4	답	2,720	2,720	국	남*시			
26	노암동	426-3	답	2,162	2,130	국	남*시			
27	노암동	427-1	전	1,217	1	국	남*시			
28	노암동	424	답	2,869	160	국	남*시			

〈편입 지장물 조서〉

ан	번 행정구역 지번 기		TI 모		물 건	<u>I</u>		소유자		
면인	8874	구역 지번 지목		물건명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단위	성명또는명칭	주소	비고
1.	노암동	426-2	대	축사	연와벽돌조	263.94	m²	남*시	남원시 시청로 60	
2.	노암동	426-3	답	축사	연와벽돌조	153.65	m²	남*시	남원시 시청로 60	
۷.	工員で	420-3	Ħ	축사	철골조	294.60	m²	남*시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고시 제2020 - 117호

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07월 03일

-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사업의 명칭 :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노암동 423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24,368 m²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관광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2. 01. 31.
-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	비고	
민호	프세지	시킨	목	(m²)	(m²)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미끄
합 계				87,212	24,368					
1	노암동	422-1	답	7,157	7,157	이*선	하*동 132			
2	노암동	421-2	답	1,983	474	국	남*시			
3	노암동	425	전	116	116	국	남*시			
4	노암동	산10-7	임	10,317	23	국	남*시			
5	노암동	810-15	구	4,901	209	국	건∗부			
6	노암동	9	답	2,649	95	국	남*시			
7	노암동	810-19	巾	134	134	국	건*부			
8	노암동	3	전	8,666	120	국	남*시			
9	노암동	3-1	전	1,291	1,176	국	남*시			
10	어현동	276	전	1,156	52	국	남*시			
11	어현동	산88	임	4,072	153	국	남*시			
12	어현동	산88-7	임	428	406	국	남*시			
13	어현동	276-1	전	243	203	국	남*시			
14	노암동	3-2	전	901	299	국	남*시			
15	노암동	산12-12	임	4	1	국	남*시			
16	노암동	산82-1	구	43	27	국	농*수산부			
17	노암동	산12-11	임	204	161	국	남*시			
18	노암동	산12-10	임	21	13	국	남*시			
19	노암동	9-1	답	386	371	국	남*시			
20	노암동	산12-9	임	306	273	국	남*시			
21	노암동	10	답	11,356	744	국	남*시			
22	노암동	810-18	구	196	37	국	건*부			
23	노암동	10-1	답	3,498	2,127	국	남*시			
24	노암동	810-16	구	127	114	국	건*부			
25	노암동	810-17	구	1,274	1	국	건*부			
26	노암동	427-2	전	1,331	19	국	남*시			
27	노암동	산13	임	6,612	3	국	남*시			
28	노암동	426-3	답	2,162	32	국	남*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	- 비고	
민오	소 새 시	지 번	목	(m²)	(m²)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U <u>- U</u>
29	노암동	427-1	전	1,217	991	국	남*시			
30	노암동	810-14	구	5	5	국	건*부			
31	노암동	810-11	구	1,264	774	국	건*부			
32	노암동	810-13	구	394	17	국	건*부			
33	노암동	422-2	납	1,967	1,967	국	남*시			
34	노암동	423-1	답	280	280	국	남*시			
35	노암동	338	전	327	1	박*정	383 명지*단지*파트 1-203			
36	노암동	810-12	구	442	4	국	건*부			
37	노암동	811-3	돠	345	24	국	건*부			
38	노암동	352-4	납	231	13	신*자	3*3			
39	노암동	810-10	구	1,096	103	국	건*부			
40	노암동	423	갭	2,804	2,804	정*국	서울 서*구 서*동 1564-6 -201			
41	노암동	424	납	2,869	2,709	국	남*시			
42	노암동	산10-8	ᄗ	2,437	136	국	건*부			

◉ 남원시 공고 제 2020 - 1290호

시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대	지	건축주	허가(협의) 및	도로	도로	도로	C	기해관계	인
번호	위	え]	- 명 성	신고번호	길이 (m)	너비 (m)	면적 (m²)	지 번	편입면적 (m²)	토지소유자
2020-1	남원시 산		최옥회	2020-건축과- 신축허가-54	943.9 5	5.3	5,060	남원시 화정동 768	184	국(건설부)
								남원시 화정동 198-7	188	국(국방부)
								남원시 화정동 235	15	이재춘
								남원시 화정동 233	10	임병균
								남원시 화정동 768	454	국(건설부)
								남원시 화정동 산46	76	노흥완,노상준, 노상리,노종천, 노권태
								남원시 화정동 231	38	노강화

	남원시 화정동 769-17	2,000	국(농림축산 식품부)
	남원시 화정동 229	10	김정수
	남원시 화정동 230-1	5	문일석
	남원시 화정동 227	17	문일석
	남원시 화정동 227-1	14	남원시
	남원시 화정동 230-2	10	남원시
	남원시 화정동 215	1	김재곤
	남원시 화정동 770-18	58	국(건설부)
	남원시 화정동 산43-4	89	남원시
	남원시 화정동 194-3	42	오금자
	남원시 화정동 194-4	76	남원시
	남원시 화정동 769-20	1,755	국(농림축산식 품부)
	남원시 화정동 184-2	17	김정수
	남원시 화정동 183-4	1	김갑순